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보고서
(2009~2014)

목차

발간사	02
01. 공익소송사건 현황	04
02. 공익소송기금 보고	05
03. 주요 공익소송사건 소개	
01 고창표 간첩조작사건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06
02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09
03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은닉 혐의 고발 및 여동생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13
04 국가유공자 피해당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	17
05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19
06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21
07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 선거권 헌법소원	25
08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9
09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34
10 수형자 변호사 접견권 헌법소원	37
11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청구 행정소송 및 보안관찰법 헌법소원	41
12 광주교도소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관련 징벌 취소 행정소송	46
13 해남교도소 언론사 제보 서신 발송 금지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49
14 전주교도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작은책> 원고 발송 불허 및 서신 검열 국가배상청구	52
04. 공익소송 일지	57
05.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애	59

발간사

산과 들의 잎들이 푸름을 더해가는 오월입니다. 올해는 푸른빛이 채 들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 잎들이 많아 슬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보고서>를 내게 된 것을 뜻 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익소송은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들이 기금을 출연해주셔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족들이 출연해주신 기금으로 2009년 5월 공익소송기금을 만들어 이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받고서도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뜻이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다수의 군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희생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군사독재시절은 물론 오늘날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으며, 유치장과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처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공익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해 드림은 물론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를 있게 한 고 유현석 변호사님과 그 유족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여러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권보호의 수호천사로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가족 여러분의 밤낮 없는 봉사가 있었기에 위의 큰 성과가 있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고 유현석 변호사님과 그 유족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인권이 침해된 분들을 도와드리고 나아가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뜻과 봉사와 헌신이 함께 모여 이 나라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없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열릴 날을 기대해봅니다.

2014년 5월 26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상임이사	이호중
공익소송팀장	주영달

01. 공익소송사건 현황

1. 개요

전체	진행중	종료			
		승소	패소/각하	취하	소계
54	37	11	4	2	17

2. 주제별

전체	군 의문사	구금 시설	집회 시위	정보 인권	국가 보안법	선거권	보안 관찰법	산재	이주민
54	16	16	7	6	4	2	1	1	1

3. 유형별

전체	고소/고발	형사	국가배상	행정	헌법소원	기타
55*	3	4	12	22	11	3

*전체 건수는 54건이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소송 1건으로 진행하는 사건이 있어 유형별 전체 건수는 55건으로 집계

4. 제기 연도별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54	6	12	6	19	11

5. 담당 변호사

현재까지 모두 23명의 변호사가 1건 이상의 공익소송사건을 수임

02. 공익소송기금 보고

항목	내역	금액(원)
수입	故유현석 변호사님 유족 출연 * 최초출연 * 5주기 추모미사 출연 * 추가 출연	100,000,000 *30,000,000 *20,000,000 *50,000,000
	승소 사건 변호사 출연	65,704,725
	소송비용 회수	7,959,580
	이자	10,184,108
	소계	183,848,413
지출	수임료 등	67,353,650
	기타	141,500
	소계	67,495,150
잔액		116,353,263

03. 주요 공익소송사건 소개

01

고창표 간첩조작사건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2011년 3월 ~ 2014년 2월)

경과

1979년 육군본부 인사장교(중령)로 예편한 고창표씨는 1983년 12월 1일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친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영장 없이 안기부에 불법 감금되어 갖은 고문을 받았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고씨가 사돈인 재일교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북한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의 수 등 기밀을 누설했다는 등 안기부가 고문으로 조작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고씨는 1985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후 1993년 5월 가석방되기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해야 했다.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고씨가 안기부가 작성한 인지동행보고 등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최소 16일간, 그의 기억에 따르면 56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되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기 위해서는 48시간~72시간 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진실위는 이러한 안기부의 불법 수사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고씨는 이를 근거로 2011년 3월 14일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는 고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 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문을 통해 안기부 수사관들이 최소 16일간 고씨를 구속영장 없이 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고씨는 재심 공판에서 “매일 안기부 지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안기부 조사관들은 내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관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면 군에서 사용하는 야전침대봉으로 구타하거나 배를 찢렸고, 입은 옷을 모두 벗긴 채 여러 명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거나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그 사이에 각목을 집어놓고 허벅지를 밟았으며, 뒤에서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곳은 대통령님 외에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다. 여기서도 뒤통수도 아무도 모른다. 좋은 말할 때 들어라. 수틀리면 네 가족들도 가만 두지 않는다. 여편네, 새끼들 가서 당장 잡아올 수 있다. 새끼들 앞에서 조사받고 싶냐”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검사 앞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자 검사는 ‘안기부에 돌아가서 새로 조사를 받고 와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말했고, 검사 옆에 앉은 타자수는 안기부의 조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타자를 쳤고 검사는 날인과정에서 이미 다 시인한 것이니깐 날인하라면서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게 하였다”고 증언했다.

2012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는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씨의 연행은 “강제력 내지 심리적 압박이 개입된 것으로서 임의동행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연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안기부 조사 당시 장기간의 불법구금 또는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씨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했다.

2012년 7월 13일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공판이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될 정도로 검찰의 항소 이유는 억지에 가까웠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검사 앞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났다. 항소심 판결도 검찰이 이 점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우리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시간 끌기 식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고씨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논리는 안기부의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 공소를 제기하는 기계적인 역할에만 머물렀던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은 안

기부의 고문 수사를 통제하기는커녕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조장했던 과거의 행태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했다. 2012년 11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와 그의 가족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는 국가가 총 1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특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이성적인 폭력에 대한 재발방지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013년 10월 17일 서울고법 제26민사부(재판장 허부열)의 항소 기각과 2014년 2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의 상고 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의의

이 소송을 통해 혹독한 고문과 불법 구금 등 과거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반인권 범죄의 실체를 거의 30년 만에 밝혀냈다. 법원은 정치권력이 저지른 인권 유린과 역사 왜곡을 인정하고 법의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을 지적하는 뜻 깊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진실위가 불법구금 사실을 밝히면서도 고문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법원은 수차례의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고문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간첩이라는 명예를 졌던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고, 역사적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켰다. 고문과 불법 구금 가해자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은 과제로 남았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간첩으로 몰려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고씨와 간첩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한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유치장 브라지어 탈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2011년 8월 ~ 2013년 9월)

경과

피해자들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라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



요했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라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해야 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성 경찰이 유치장 내 탈의실 밖에서 근처에 있던 남성 경찰이나 남성 유치인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브라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얇은 티셔츠를 입고 물대포를 맞아 완전히 젖었는데도 브라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다. 어떤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묶고 있던 얇은 고무줄까지 압수당해야 했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이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더듬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여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다.

2008년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경찰청은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브라지어의 위험성 유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6월에도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대학생이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경찰의 답변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008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브라지어 탈의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함으로써 브라지어 탈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정당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

찰은 향후 여성유치인용 조끼를 비치하여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에 2008년 사건의 피해자 4명은 2011년 8월 10일 국가를 상대로 각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공연하게 브래지어를 벗는 경험을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를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경찰은 브래지어가 자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경우는 없었고, 2003년 이후 국내 구치소·교도소는 물론이고 유치장에서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위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교도소·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에게 1인당 3개까지 브래지어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판매까지 하고 있음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경미한 범죄로 연행된 사람들로 자살이나 자해의 동기나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으므로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자살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해진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게다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면회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 사실을 외부로 알리면서 동료들이 이를 항의하자 경찰은 하루 만에 브래지어를 돌려주고 새 브래지어의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은 조직 내부에서조차도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행사했던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혁명,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제9조 제1항)을 경찰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호송규칙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이 사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내부 규칙에 불과한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했음은 물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호송규칙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직무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였다.

2012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

고 판결했다.

2012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대성)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5월 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우리 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공동 논평을 통해 경찰에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단체는 경찰청에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를 질의했다. 경찰청은 2013년 7월 16일자 답변서와 7월 29일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사고 유형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했고 △여성 유치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하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의 정밀검사 대상자 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유치인'에 한해 유치인이 착용 중인 브래지어 대신 스포츠 브래지어를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2013년 9월 4일 발표한 공동 논평을 통해 “유치인보호관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언제나 브래지어 탈의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광범위한 예외를 둬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적인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유치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탈의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유치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경찰의 탈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유치인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자살 등의 경우 그 원인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 등 소지품을 압수하는 조치는 자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며 유치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인이 원할 경우 정신과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치인보호관 특히 턱없이 부족한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더 배치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며 △유치장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의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초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이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 구금 기간은 짧지만 수용자가 심리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처우는 수용자들의 줄기찬 노력과 인권단체들의 관심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유치장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비교적 단기간의 구금이며 거쳐 가는 장소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은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자체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를 남겼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유치장 처우 관련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경찰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한편,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인권감수성, 성 인지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의 엄격한 법적 잣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다양한 피해를 인권침해로 호명하고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가 이번 판결로부터 배울 점을 찾기 바란다. 국가인권위는 인권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은닉 혐의 고발 및 여동생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2014년 2월 ~)

경과

피해자 유씨는 탈북 화교로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8월 1심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증거로 ①출입경기록 ②화룡시 공안국의 팩스 회신문 ③삼합변방검사참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을 제출했다. 그



러나 2014년 2월 13일 중국정부는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증거 조작의 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이 ‘수사’도 아닌 ‘조사’에 나섬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4년 2월 26일 증거 날조·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4년 2월 16일 검찰 발표와 이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①과 ③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았고, ②는 주선양총영사관으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①과 ③은 무죄 판결 즈음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로 발령받은 피고발인 이△△(국정원 직원)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이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이를 입수했고, 위조된 증거를 검찰에 제공한 것이다. ②는 이△△이 팩스로 수신 받아 검찰에 제공한 것이다. 피고발인 이○○검사는 내사 단계 및 2013년 9월경까지 총 4종류의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을 받았고 유씨의 변호인들

이 법정에서 위조를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 게다가 이검사와 또 다른 피고발인 이○○검사는 법정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공문서를 통해 회신 받은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다가, 중국정부가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후에는 중국정부가 제공을 거부하여 외교라인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명백하게 법원을 기망한 행위로,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를 날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검사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은 1심에서 2012년 1월 21일과 23일경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증 결과 이 사진들은 모두 중국 연길시에서 찍은 사진들로 밝혀졌다. 또한 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던 유씨의 노트북에는 같은 해 1월 22일과 23일 연길시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이 있었고 이는 유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유씨가 이 사진들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이○○검사 등은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이○○검사 등은 유씨를 기소하기 전인 2012년 12월경 통화기록을 이미 확보하여 유씨가 2012년 1월 23일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은닉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1월 22일과 23일 저녁 유씨가 중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추가로 이를 제출하면서 1월 23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는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유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은닉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12조를 위반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4월 14일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선양총영사

관의 이모 영사 그리고 이들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 마무리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들로 볼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증거조작이 ‘윗선’의 개입 없이 이들 실무자 급의 직원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수긍할 수 없다. 지휘라인에 따른 철저한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국정원 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내부 기획회의까지 하면서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에는 윗선 간부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조작을 위하여 국정원의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은 최소한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더 나아가서 국정원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서 증거조작 관련 여부를 규명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대공수사국장 이상 국정원의 윗선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이들에게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유씨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심각한 문제이다. 유씨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문건을 직접 위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들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들이 날조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 담당 검사들은 중국 허룽시 당국이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출입경기록을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마치 정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문서를 입수한 것처럼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한 전력이 있다. 또한 국정원 측이 조작한 허룽시 공안국의 발급사실확인서는 팩스번호가 다른 두 개의 문건이 검사에게 건네졌는데도 검사들은 이 두 개의 문건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담당 검사들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담당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몰랐다는 진술 등을 핑계로 검사들을 불기소처분하였다. 이는 수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동료 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정원과 담당 검사들이 저지른 증거조작은 사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증거를 날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조작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를 적용하였다. 이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법적용의 왜곡행위이다. 증거조작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는 법적용은 결국 증거조작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짓이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음

이 분명해 진 이상,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4월 당시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씨 여동생 관련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사건도 공익소송사건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 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유씨는 2014년 4월 12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여동생에 대한 수용 해제를 요구하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관의 영장 없이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반년 가까이 갇혀 있었던 유씨의 여동생은 인신구제청구 심문 기일 직전에 석방되었다. 이후 유씨의 여동생은 구금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에 대해 용기 있게 증언했고 이는 유씨에 대한 무죄 판결의 첫걸음이 되었다.

의의

이 사건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는 달리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검찰의 박주기 수사로 증거 날조·은닉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경과

과거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죽음의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자살로 처리된 채 같은 법 제4조 6항의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당해 왔다.

2009년까지 운영된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라며 사망 이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건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다.

다행히 2011년 9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되었다. 대법원도 2012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국가유공자 인정의 폭이 과거보다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가족이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받더라도 보훈처가 법원 판결의 취지와 달리 ‘지원순직군경’(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인의 과실 또

고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결실’

가혹행위 당해 목숨 끊은 군인 2명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명의 청년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두 사건 모두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고 유현석 공익소송기금’(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을 통해 서였다. 공익소송기금은 인권연호사였던 유현석 변호사(사친)의 사망 5주기를 맞아 2009년 그의 유족들이 천주교인권위원회에 5000만원을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유 변호사는 1952년 법조계에 발을 디딘 후 14년간 반사 생활을 했다. 이후 변호사도 활동하며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민주와 인사들의 변호를 맡아 군사법정에서 “용기를 내 법관으로서 양심에 맞는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훈계



기운유서대필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변론을 도맡아 했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공익소송기금은 천주교인권위에 서 5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공익소송팀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군 의문사 8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공익소송을 지원했다. 지난해 2월 희망버스 기획자들에 대한 경찰의 위치추적은 위법이라고 제기한

조르달할 일화가 유명하다. 유 변호사는 이후에도 권인숙 성고문제정 신청 사건과 박종철·김경대 지사 사건, 강기운유서대필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변론을 도맡아 했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주교인권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체포됐다 가 브레지어 담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공익소송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천주교인권위 강성훈 심원활동가는 “의할만 일이 있어도 변호사비가 없어서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기금이 적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의 셋째 아들 어규씨(55)는 “아버지가 평소에도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아 기금 출연을 권장했던 것”이라며 “아버지 생전의 뜻이 잘 이어진다는 것이 기쁘다. 8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결정된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12건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지원순직군경으로 결정한 사건 4건의 지원순직군경 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의

법원 판결을 통해 죽음의 진실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온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군 복무 중 자살이 개인의 나약함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비인간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망 사건의 조사와 국가유공자 심의 과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2011년 11월 ~)

경과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그 후 불어온 민주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50여 년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당시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주민등록법의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는 ‘지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의미할 뿐, 주민등록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열 손가락 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지문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다른 정보들, 예컨대 성명, 사진, 주소와는 달리 개인의

신체에 전속하는 생체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국가가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직접 제정하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도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단지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인구동태의 명확한 파악,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그 목적으로 흔히 ‘치안유지’, ‘국가안보’, ‘범죄수사 목적’, ‘대형사건·사고에서의 변사자 확인’ 등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또한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한하여 지문을 채취하거나 개인정보 주체의 진지한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되는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11월 21일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8년 지문 채취와 함께 주민번호(12자리)가 기재된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도민증이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죽을 때까지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는 이른바 1.21 사태 이후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국민교육헌장 제정, 예비군 편성 및 무장 등 국가안보를 빌미로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병영국가를 만든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 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같은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쿠데타 정권이 만든 국민감시제도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헌재에 계류되어 있다.

의의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지문날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현재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전자주민증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 전자주민증 도입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2012년 2월 ~)

경과

2008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민단체 간부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화시는 물론 통화하지 않는 대기모드(sleeping mode)인 경우에도 매 10분~3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수사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석방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당시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2012년 드러났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부산 영도경찰서가 당사자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확인되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4차 희망버스 직전인 2011년 8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 받고, 이후 10월 21일까지 송경동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또한 부산 영도경찰서가 송경동 시인에게 보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에 따르면, 최소한 3차 희망버스 직전인 2011년 7월 22일 16시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간 위치추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진우 실장의 수사기록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도 실시간 추적당했다. 2012년 2월 29일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2년 6월 19일 정기선과 김혜진도 같은 취지로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2013년 철도파업 중 경찰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2014년 드러났다. 이에 2014년 5월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이다.

위치추적의 대상이 되는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아래 통비법) 제2조 제1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바목)에 해당한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사목)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하여 경찰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지국 위치정보를 전송받는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1년에는 허가서 발부 시점 이전(과거)의 자료에 한정되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자료제공요청서 접수시점 이전의 자료에 한정”한다는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업무처리지침을 인용하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사가 과금의 필요상 보유한 기록을 수사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는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비해 허가 요건이 완화되어 입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5년경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범위에 ‘장래자료 :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이라는 단서를 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 포함’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했다. 수사기관들은 허가서 발부 시점 이후(장래)의 자료까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멋대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법원도 아무런 고민 없이 허가서를 발부해 왔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이 필요함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규정을 활용하여 장래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명백히 위헌이다.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은 '장래의 위치추적자료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지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라고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규정이다. 같은 호 사목 또한 장래의 위치추적 자료 포함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통비법 제13조 제1항은 경찰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게다가 통비법 제13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처럼 형사절차의 특정 절차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본인, 가족, 제3자'처럼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 있는 지인까지도 위치추적을 당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한편, 위치추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반면, 당사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도 없다. 통비법 제13조의3이 사후 통지를 공소 제기 또는 불입건 처분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당사자가 모르게 장기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사자가 뒤늦게 통지를 받더라도 요청기관과 방식, 기간 등만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는지 그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통비법 제13조의3이 사후 통지의 내용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가 피수사자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당연히 통지받아야 할 '제공요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범죄'가 그 대상이 되는 점도 큰 문제이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거나 통신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범죄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통비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감청의 요건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비해 크게 완화되어 있는 것이다. 법원 허가의 부당성을 다룰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에 남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5만여건이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2012년 23만여건까지 대폭 증가했다.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원의 기각률도 2006년과 2007년 0.9%, 2008년 8월까지 1.2%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위치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법원의 영장 없이 형식적인 허가만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람이나 사람의 휴대품에 위치추적기를 달 경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옥내에서의 위치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U.S. v. Karo(468 U.S. 705)). 이후 후속 판례들은 휴대전화와 복수의 기지국 사이의 대기모드(sleep mode) 교신기록은 위치추적정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면서, 일반적인 영장요건(probable cause)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의자의 배우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발부된 영장의 범위가 벗어난 시기, 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실시간 위치추적을 ‘수색’(search)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시점과 지역에 대한 수색을 허용하는 일반영장(probable-cause warrant)이 없는 이상 이 같은 위치추적 수사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U.S. v. Jones).

이처럼 휴대전화 위치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추적을 허용하는 통비법 관련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이 사건은 현재 현재에 계류되어 있다.

의의

이 사건은 희망버스와 철도파업에 대한 마구잡이 출석요구와 과잉 수사 및 기소 등 반인권적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위치추적하는 위헌적 관행을 중단하고 국회는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전자 미행’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현재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 선거권 헌법소원

(2012년 4월 ~ 2014년 1월)

경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이다. 이에 2012년 총선에서 수형자 또는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과 2012년 대선에서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 각각 2012년 4월(1차 헌법소원)과 2013년 2월(2차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각 사건의 청구인은 다음과 같다.

■ 1차 헌법소원 (2012년 4월 청구)

○ 전박길수 (전쟁없는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홍원석 (전쟁없는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구교현 (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

2010년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사건(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2차 헌법소원 (2013년 2월 청구)

○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 회장)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3년 1월/집행유예 4년 선고

○ 이종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동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동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애인교육권 쟁취, 안마사 생존권 수호,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촉구,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수용시설 반대와 탈시설 권리 쟁취, 탈시설 자립생활 쟁취,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 중단, 장애인 예산 삭감 규탄 등을 요구하는 여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된다. 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이나 △일정한 형기를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범죄의 동기·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심사를 받고 석방된 가석방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금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집행유예자 △경미한 범죄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은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미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수

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영국의 국민대표법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캐나다 최고재판소도 1992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규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징역 2년 이상의 수감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한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2002년 거듭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2002년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사건)에는 7(기각)-1(위헌)로, 2009년(2007년 대통령선거 투표권 박탈 사건)에는 5(위헌)-3(기각)-1(각하)로 합헌 결정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지만 2015년 말 시한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을 명하면서 그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직후 우리 위원회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유형과 형기 등을 고려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범죄의 대가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구시대의 발상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국회가 모든 국민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를 요구했다.

의의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수형자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자도 형벌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유박탈 이외에는 이른바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단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선거권 박탈은 수형자 등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현재의 결정은 수형자 등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전 세계적 추세에 이제야 발맞췄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현제가 수형자 선거권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수형자에게 전면적으로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013년 3월 ~)

경과

2013년 3월 11일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2010년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피해자 45명이 각각 5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소송 대상이 된 경찰서는 서울청 산하 12개 경찰서 등 전국 6개 지방청 산하 21개 경찰서이다.

지방청 (개수)	경찰서
서울 (12)	중부, 종로, 용산, 성북, 성동, 강북, 관악, 강동, 구로, 양천, 송파, 은평
부산 (1)	서부
대구 (1)	북부
경기 (2)	수원서부, 여주
강원 (3)	춘천, 강릉, 홍천
경북 (2)	경주, 포항북부

소송에는 △2011년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거나 체포된 송경동·정진우·김혜진·정기선 씨 △한진중공업 2011년 정리해고자 박영제 씨 △2011년 한미FTA 저지 시위에서 연행된 이강실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10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서 연행된 김정욱 조합원(쌍용차지부) △2012년 대구시지노인병원 투쟁으로 구속되었던 임성열 본부장(민주노총 대구본부)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집회 건으로 2012년 2월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된 김병용 사무국장(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로 1년 8개월 동안 수배되었다가 2010년 체포된 강민욱 전 의장(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2011년과 2012년 6.15청학연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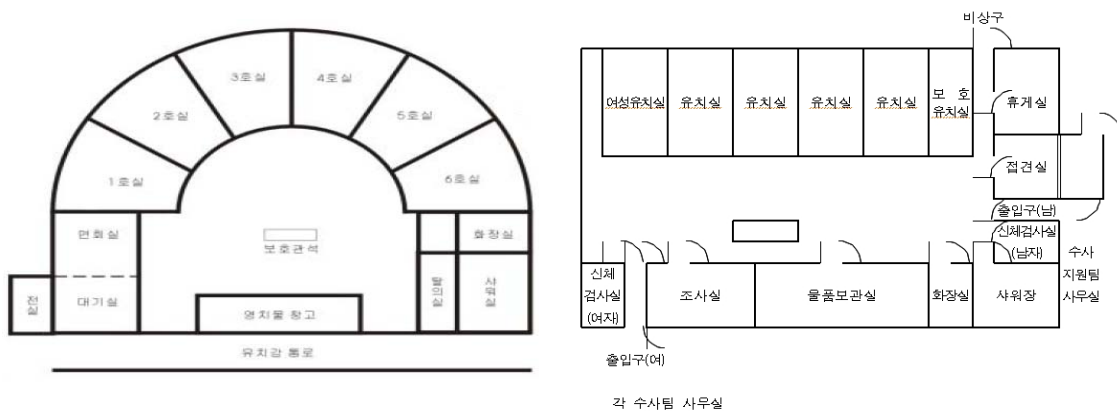
연행된 유승재·이희철·유선민 씨 △2010년 노조 투쟁 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연행된 정연재 지회장(발레오만도) △2010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41일 간 이포댐 기둥 상단을 지켰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과 박평수 집행위원장(고양환경연합) △2011년과 2012년 강원도 골프장 반대 활동 중 체포된 박성을 공동집행위원장(범도민대책위원회)과 조승진 부위원장(강릉 구정리 대책위원회) △2010년 중앙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한강대교 남단 아치를 점거했던 김창인 씨(대학생) △2011년 3월 자본주의연구회 사건 연행자 면회를 요구하다 홍제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연행된 대학생들 △2010년 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대학생들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연행된 박자은 전 의장(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들 △2012년 4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규탄 시위에서 연행된 대학생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체포된 대학생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가 유치실 구석에 설치된 화장실이 사방이 막힌 밀폐형이 아니라 미닫이문만 있는 개방형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과 소리, 냄새가 같은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유치인보호관(경찰관)들에게도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또한 유치인보호관이 감시하는 곳에서 유치실을 향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감시 및 녹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아래는 부산 동부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 수용되었던 원고 중 한 명이 기억에 따라 그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미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결정에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하체를 가려줄 만한 높이의 하단부 차폐벽 위에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그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현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06년 경찰청은 1미터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에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화장실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은 유치실 배치를 감시편의에 초점을 둔 부채꼴형에서 일자형으로 개선하여 유치인의 초상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부채꼴형 유치장과 일자형 유치장의 평면도이다.



그러나 경찰청 발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우리 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유치장이 있는 전국 112개 경찰서 중 70개(62.5%)가 밀폐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또한 전체 화장실 925곳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곳(12.5%)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형 화장실이다. 모든 화장실이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된 경찰서는 서울청 1개(도봉서), 부산청 1개(동래서), 인천청 2개(남동서, 서부서), 대전청 1개(동부서), 충남청 1개(천안동남

서) 등 전국적으로 6개에 불과하다. 2001년 현재 결정 이후 10여년이 지났고 2006년 경찰청이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개방형 화장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치실 배치가 일자형으로 개선된 곳은 112개 경찰서 중 15곳(13.4%)에 불과했다.

한편, 유치장 CCTV는 현행법에도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구 행형법이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CCTV 설치의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으나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제94조 제1항)고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경찰서의 유치장 CCTV는 자살 우려 등을 따지지 않고 유치실 내부의 모든 유치인을 감시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장 CCTV가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경찰이 유치장 안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대면계호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경찰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면 CCTV가 있다고 해서 자살 등을 방지할 수는 없다. 또한 대면계호와 CCTV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면계호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 속에 보관될 뿐이고 재현될 수 없는 반면 CCTV로 녹화된 내용은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복사되어 유포될 수 있으며 원하는 특정부분을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확대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치장 CCTV는 설치 목적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유치인의 프라이버시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성 유치인의 경우 유치장 공간이 여성 영역과 남성 영역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가 남성인 유치인보호관의 감시를 받음에 따라 더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2012년 10월 우리 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 안팎의 유치인 중 여성이 약 1만 명에 이르는데도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전국적으로 105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강원청, 충북청, 충남청, 전남청 산하 경찰서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지방청	계	남	여
계	1,073	968	105
서울	236	221	15
부산	73	55	18
대구	48	38	10
인천	49	41	8
광주	35	32	3
대전	27	21	6
울산	14	11	3
경기	182	147	35
강원	54	54	0
충북	47	47	0
충남	43	43	0
전북	51	49	2
전남	40	40	0
경북	84	81	3
경남	77	76	1
제주	13	12	1

2012년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녀 혼용 유치장 구조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12개에 달하는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 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만 나뉘져 있으며, 대부분의 유치실이 부채꼴 형태로 배치되어 양쪽 끝에 위치한 유치인들은 서로 마주볼 수밖에 없어 화장실 사용과 수면 등 일거수 일투족이 다른 유치인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다. 권익위가 접수한 고충민원 중에는 △젊은 여성 유치인의 경우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에게 요구하지 못하거나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생리대를 전달하는 행위 △유치인이 하절기에 덥다는 핑계로 상의를 벗거나 팬티 차림으로 여성 유치실을 바라보는 행위 등이 있었다.

2013년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광역유치장 3곳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광역유치장의 경우 유치실 내 화장실의 높이가 1미터의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지 않아 냄새 및 소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이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되어 있다.

의의

소송 중 제출된 2013년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환경 개선 계획’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청은 12개 경찰서에 총 20억 원을 들여 밀폐형 화장실 및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피해 배상은 물론 전체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이 개선되고 위법하게 설치된 CCTV가 철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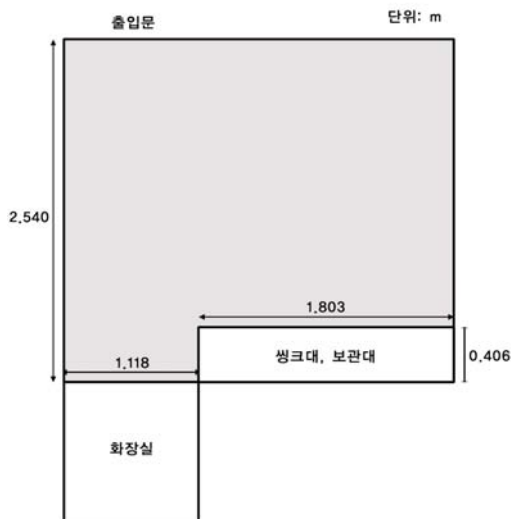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2013년 3월 ~)

경과

구금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2013년 3월 7일 강성준씨(우리 위원회 활동가)가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과밀수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1년 7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교도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2012년 12월 7일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



※거실의 높이 : 2.388m

※싱크대와 보관대의 높이 : 0.787m

1) 싱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면적

$$2.540\text{m} \times 2.921\text{m}(=1.118+1.803) = 7.419\text{m}^2$$

2) 싱크대와 보관대를 제외한 면적

$$7.419\text{m}^2 - 0.732\text{m}^2(=1.803 \times 0.406) = 6.687\text{m}^2$$

3) 싱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용적

$$7.419\text{m}^2 \times 2.388\text{m} = 17.72\text{m}^3$$

청구인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13하(下)14실의 거실 바깥 표지판에는 거실의 면적이 8.96㎡, 정원은 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제로 측정한 결과, 거실의 면적은 썩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더라도 7.419㎡, 썩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6.687㎡에 불과했다. 또한 거실의 높이는 2.388m여서 썩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용적은 17.72㎡ 였다.

썩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면적(7.419㎡)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구인이 수용된 후 13하(下)14실의 수용인원과 1인당 면적 평균은 다음 표와 같다.

수용기간	수용인원	1인당 평균면적
8일 오후 4시경 ~ 9일 오후 4시경	4명	1.85㎡
9일 오후 4시경 ~ 11일 오후 9시경	5명	1.48㎡
11일 오후 9시경 ~ 14일 오후 1시경	6명	1.24㎡
14일 오후 1시경 ~ 18일 오후 1시경	5명	1.48㎡

청구인이 수용된 거실은 수용면적이 7.419㎡이고, 수용정원이 6명이므로 1인당 면적이 1.24㎡(0.375평)로서 평균적인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비좁았다. 거실 바깥에 표시된 거실의 면적 8.96㎡는 아마도 화장실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49㎡에 불과했다. 청구인은 12월 18일 오후 1시경 사회복귀방으로 전방했고, 12월 20일 0시경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해외의 경우 과밀수용에 대해 이미 위헌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독일 행정법은 수형자가 기거하는 거실은 “거주하기에 적합하게(wohnlich)” 혹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기용적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충분한 정도로 난방, 환기시설, 거주면적 및 창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4조). 이 규정은 거실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국가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는 거실 조건을 유지하도록 의무지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대에 이미 7.98㎡의 면적과 22㎡의 용적을 가진 독거실에 2명을 수용(1인당 3.99㎡, 1.21평)한 것은 제144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독일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나왔다. 11.54㎡의 방에 3명을 수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다. 독일 행정법이 제정된 직후인 1978년 10월 3일 행정위원회의 행정시설 건축에 대한 권고안(Empfehlungen für den Bau von Justizvollzugsanstalten vom 3.10.1978)에서는 독거실의 경우 9㎡, 2인실

의 경우 16㎡, 혼거실의 경우 수형자 1인당 7㎡를 최소면적으로 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 한 교도소의 구금 조건 전체를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판결(Holt v. Sarver)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개방된 막사에의 과밀수용, 그 결과 폭행의 위험성 증가, 수형자를 무장시켜 간수로 활용한 점, 부적절한 의료설비, 불결한 위생상태, 재사회화프로그램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 이 모든 조건들은 “전체로서” 수정헌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잔인하고 비통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1978년 판결(Hutto v. Finney)에서 징벌방의 열악한 조건(부정기인 점, 평균 4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수형자가 창문도 없는 80평방피트의 징벌방에 구금된다는 점, 수도꼭지와 화장실 외에는 일절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요는 밤에만 지급된다는 점, 식사는 하루에 1000칼로리 미만이라는 점 등)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징벌구금의 일수를 30일로 제한한 연방법원의 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일반 사회에서의 생활 조건과 가능한 한 유사한 생활 조건 하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박탈로 인한 해악적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고 수용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생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성인 남성이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정도의 비좁은 거실에서 생활해야 했다. 과밀수용에 따라 공간이 협소해지면 수용자들의 스트레스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에는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의의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1인당 면적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최저수준의 거실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다. 마치 최저임금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가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 조건의 최저기준을 정립할 의무가 있다. 이번 헌법소원이 서울구치소는 물론 구금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되고 수용자 생활의 최저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수형자 변호사 접견권 헌법소원

(2013년 8월 ~)

경과

2013년 8월 8일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기결수용자)에게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시간의 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경우 이러한 접견이 보장되지 않고 일반 접견만 허용되고 있다. 즉,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형자 이아무개씨는 2013년 4월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되어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부칙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공익소송을 신청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익소송사건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허윤정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했다. 이씨는 2013년 5월 6일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5월 13일 허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방문하여 접견 신청을 했다. 허 변호사는 소측에 변호사 신분증과 이씨와의 소송위임계약서를 제시했고, 수임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접견을 신청했음을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회당 접견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접견 △접견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접견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는 접견 △접견 내용이 청취, 기록, 녹음, 녹화되지 않는 접견 등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측은 허 변호사가 이씨의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씨는 수형자이므로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이 불가하다며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9년 4월 법무부는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을 산하 교도소·구치소에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수형자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원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모두를 의미하며, 특별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만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재판청구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충실한 공격권과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재판청구권이 단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쟁점이 있으며 △어떠한 소송방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실제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가 재판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다. 수형자의 이러한 조건은 형사절차상 검사와 법적 논쟁을 벌여야 하는 구속 피고인의 불리한 지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행형법 26조를 통해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수형자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해 당해 민사사건의 상담 및 사전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접견 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의 전적인 자유재량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접견시간의 제한이 소송준비를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고 … 본건에서 접견시간을 30분 이내에 제한하는 것이 처우상은 물

론 형무소 내의 규율질서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쿠시마형무소 소장이 본건 각 접견에서 30분 이내로 하는 조건을 단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수형자가 소송 제기 여부를 협의하고 소송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서신 등을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발송을 불허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위 집필문서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발송하여 소송자료로서 전달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중요한 증거방법인 위 집필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서울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57883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소송 준비를 방해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기결수형자는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기결수형자에게도 민사, 행정 등의 소송 계속 여부에 관계 없이, 접견횟수 제한과 무관하게 접견이 허용된다고 하면 소송을 빙자하여 변호사 접견을 하려는 수용자를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수형자의 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를 몰각함은 물론 수용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그러나 합헌 결정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고 재판관도 모두 교체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헌재가 전향적인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의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이후 헌재는 수형자 변호사 접견과 관련된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잇달아 내놨다. 헌재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변호사로부터 효율적인 재판준비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며,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2014. 7.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결정). 헌재는 “이 사건 접견조항의 개정 이전이더라도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 재판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 교정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접촉차

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의 취지에 맞게 접촉 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접견조항 개정 전에도 수형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현재는 수형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결정). 수형자와 헌법소원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행위는 접견내용의 노출로 인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할 수 없게 하고, 특히 구금시설이 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을 해칠 수 있으며, 접견의 상대방이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라는 점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기록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 중 현재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쟁점은 △회당 접견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접견 △접견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접견이다. 법무부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을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수형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접견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여전히 한달에 정해진 접견횟수에 포함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신속한 위헌 결정을 기대한다.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청구 행정소송 및 보안관찰법 헌법소원

(2013년 8월 ~)

경과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과 관련하여 기간 갱신결정 취소청구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보안관찰제도는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보안감호처분은 폐지되었지만 보호관찰처분은 보강되어 신설되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등을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제4조)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피보안관찰자가 되면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예정지 △예정일 △이전사유 등을,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대상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등을, 10일 이상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제18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명의 피보안관찰자가 있다.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처분대상자 수	3,184	2,962	2,773	2,593	2,383	2,256
피보안관찰자 수	50	45	43	41	45	43

당사자 김경환씨는 지난 2000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당)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3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2007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고 이후 2009년과 2011년, 2013년 7월 거듭 기간갱신을 결정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30일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고의영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출소 이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는 등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원고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상고했으나 2014년 4월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서울고등법원 소송 계류 중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1월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 및 법 규정 형식을 계승한 법으로 △그 대상범죄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으며 △시행령(제8조)과 시행규칙(제17조, 제19조)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에 실린 사례에 따르면, 사상 전향을 거부했다거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 결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담당 형사가 민가협 주최의 집회

나 모임은 가면 안 된다고 강요한 사례, 출소 후 목장에 가서 한달 가량 일을 했는데 담당 형사가 목장 주인에게 “이 사람은 사상이 불순하고, 독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해서 쫓겨난 사례도 있었다.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하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인 행정기관이다. 형벌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보안관찰법은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갱신 기간의 횟수나 최대 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형사제재 기간의 한정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 금지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다(제19조).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지도 조치의 재량권이 집행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부여되어 있고, 회합·통신 금지의 대상자나 출입금지의 장소 등이 법정되지 않아 개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자의에 맡겨져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흔히 보안관찰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원칙인 사법권 관할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제재이다. 보안처분은 그 실행 여부 및 정도에 관한 결정을 사법부가 해야 하며, 보안 처분의 부과 여부 및 정도의 결정은 장래 예상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범할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보안처분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바, 보안관찰법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기본 원칙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자의적, 편의적 판단만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우 반인권적이다. 또한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에서 “보안관찰처분은 위법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재범행위로 인한 처분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행정처분 형식의

결정으로 오용의 가능성”이 크다며 보안관찰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2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12~2016)에서도 “보안관찰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운용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 등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2014년 3월 24일 아시아의 대표적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보안관찰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인권위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오남용되었던 실정법이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에도 아직 존재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의 증진을 가로막는 심각한 법적 제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의사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나아가 권력분립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조속히 개정 및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해 아시아인권위는 “이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부의 법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대법원이 해 왔던 행정적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사법부의 역할을 재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의

행정소송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하여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검찰이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으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과거 ‘민혁명 사건’과 연계시키려 하며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등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에 나선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한편, 현재가 대법원 판결을 핑계 삼아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김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현재는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해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

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등)고 판단한 바 있다. 보안관찰법 관련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보안관찰법 제23조) 일반적인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헌재 결정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전제성 원칙의 예외로 보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거듭 합헌 결정을 해왔다. 1971년 이른바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으로 투옥되어 7년 형기를 마친 후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988년까지 10년 동안 보안감호소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서준식(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1997년 헌재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결정).

2003년에도 헌재는 ‘최연소 장기수’라 불렸던 강용주씨가 출소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조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가17·2002헌바98(병합) 결정).

그러나 지난 합헌 결정 이후 10년 넘게 지났고 재판관도 모두 교체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한편, 유현석 변호사님은 생전에 보안관찰법 헌법소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 2001년 헌재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하여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제27조 제2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22 결정)이 유변호사님께서 수임한 사건이었다.

광주교도소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관련 징벌 취소 행정소송

(2014년 3월 ~)

경과

2014년 4월 10일 소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되었던 광주교도소 트랜스젠더(MTF) 수용자 김아무개씨 사건과 관련된 징벌 취소 행정소송이 광주지법에 제기되었다.

2014년 1월 17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 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발을 강요하자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약 35분 후인 10시 15분쯤 갑자기 기동순찰팀이 김씨가 수용된 독거실에 들어와서 거실검사를 시행하여 △보온물병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를 발견했다. 소측은 지시불이행과 미허가 물품 소지 혐의로 김씨를 조사수용했고, 1월 29일 징벌위원회를 열어 금치 9일의 징벌을 의결했다. 이는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에 따른 징벌 부과기준(9일 이하의 금치) 가운데 가장 엄중한 징벌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조사수용된 때로부터 징벌이 종료된 2월 6일까지 21일간 징벌방에 감금되었다. 또한 김씨는 징벌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 당했다.

강제이발은 현행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형집행법 제32조는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제1항),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두발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위생 등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 제1항은 “정복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도’란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객체에 협력을 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또한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강제이발은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며 따라서 교도관의 강제이발 지지도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소측은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금치 징벌을 결정한 것이다.

구 행형법 제23조는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하여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를 뒀다. 당시 법무부예규 ‘수용자 이발 등 지침’에 따라 남자 수형자는 앞머리 10cm, 뒷머리·옆머리는 각 2cm, 여자 수용자의 경우 단발카트형 또는 파마웨이브형으로 이발해야 했다. 하지만 강제이발은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구 행형법이 2007년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는 삭제되었다. 이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강제이발 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신체의 외형적 형상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즉 진정한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4. 26. 결정 09진인4676).

광주교도소도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도소는 이번 사건 관련 우리 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는 형집행법 제83조에 따르면) 시설의 질서와 수용관리의 형평을 위하여…기결수형자의 경우 두발을 짧게 자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광주교도소는 진정한의에게 두발을 단정하게 하도록 지도하였을 뿐, 강제로 이발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은 광주교도소가 김씨에 대한 징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이발 지시 거부를 명시한 것과 완벽하게 모순된다. 우리 단체들은 제출된 소장을 통해 이번 징벌은 “위법한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므로 그 위법성을 그대로 승계하여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 당일 시행된 거실검사가 이발 요구를 거부한 김씨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징벌의 핑계를 찾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이발 요구를 거부한지 35분 만에 갑자기 거실검사가 시행되었다. 미허가 물품으로 적발된 보온물병덫개 1개는 출소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배급받은 모포를 잘라 주머니 모양으로 이어 붙인 것이다. 이는 배급받은 온수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낙후한 건물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김씨 뿐만 아니

라 다른 수용자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포 3개는 김씨가 입실할 당시부터 이미 거실에 있던 것이며 부채 1개 또한 김씨가 안양교도소 수용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소측에서 나눠 준 것이다. 비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와는 무관하다.

한편, 이번 징벌은 종료되었으나 김씨가 두발을 자르지 않는 한 소측이 다시 이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듭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김씨에 따르면 최근에도 일부 교도관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계속 버텨도 언젠가 강제로 자르거나 계속 출소할 때까지 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2014년 3월 11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에 대한 이발 요구와 추가 징벌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의의

이 소송을 통해 교정시설에 만연한 강제이발 조치를 근절하고 수용자를 부당하게 복종시키기 위해 징벌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해남교도소 언론사 제보 서신 발송 금지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014년 4월 ~)

경과

언론사에 보내는 제보 서신의 발송을 금지당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4월 15일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아무개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2013년 9월 12일 각각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주었다.

2013년 12월 6일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우리 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김씨의 편지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송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은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김씨가 언론사에 보내려 한 편지 2통은 9월 초 해남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광주교도소에서 쓴 것으로 이송된 후 보내려 한 것이다. 목포 KBS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무부장관 청원 등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아무야로 넘어가기가 다반사이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가 자신으로부터 티셔츠를 갈취 당했다고

무고하였고 △이에 따른 보복성 검방 때문에 독방에 조사수용 되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티셔츠는 이송되면서 선물로 주고 간 것이었고 이후 검사가 해당 수용자를 무고죄로 약식기소 했다고 한다.

김씨가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마약사범이 일반사범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실제로 당시 언론은 마약사범이 일반 수용자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반입한 사건, 정신과 의사가 수감 중인 마약사범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사례, 마약사범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공범과 수학 문제 형식의 암호문을 주고받은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김씨의 편지는 이런 기사를 바탕으로 수감 생활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마약사범과 일반사범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었다.

위 2통의 편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와는 무관하므로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서신 발송을 금지한 조치는 위법하다. 설사 김씨의 서신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언론사다. 또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언론사와 당사자인 김씨가 지는 것이지 해남교도소가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하여 서신 발송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의의

해남교도소가 서신 발송 금지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라는 조문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렵다. 지금은 거짓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재판관 5인은 ‘허위의 통신’ 부분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을 통해 서신 발송을 불허당한 당사자가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자의적인 서신 발송 불허 조치의 근거인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부분에 대한 현재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작은책> 원고 발송 불허 및 서신 검열
 국가배상청구

(2014년 5월 ~)

경과

월간지 연재 원고의 발송을 불허 당하고 서신을 검열 당한 양심수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5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등)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씨는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형이 확정되어 2010년 8월 전주교도소로 이감된 이씨는 2011년 9월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한 후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강제로 알몸검신을 당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당시는 모든 발송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 2012년 2월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발송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 이에 따라 발송 서신을 봉합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자, 3월 이씨는 금속노조 김아무개씨에게 편지를 보내 알몸 검신 사실을 알렸고, 이는 4월 언론에 보도되었다. 소측은 이를 문제 삼으면서 발송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안수들은 서신을 검열해야 하므로 무조건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씨는 소측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매우 불안하게 지내야 했다.

한편 2012년 10월경 소측이 자살방지 명목으로 수형자 거실의 30cm 높이의 종이 책상을 15cm로 잘랐다. 책상이 너무 낮아 허리가 너무 아팠고 독서 및 집필이 어려웠던 이씨가 이를 외부에 알리는 서신을 보내려하자, 소측은 발송 서신을 검열한 후 발송을 불허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할 것을 강요했고, 결국 서신을 발송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위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형집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13년 2월 형집

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마약류·조직폭력사범 등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장이 개봉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 시행령 개정 때까지는 이씨에게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소측은 개봉 제출을 강요한 것이다. 이는 이씨가 이른바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측이 현재의 위헌 결정마저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이씨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측은 서신의 개봉 제출을 요구했다.

이씨는 2012년 6월경부터 월간 <작은책>에 수필 형식으로 북한을 방문한 에세이를 연재했다. 이씨는 편지 봉투에 출판사에 보내는 원고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송했고 이는 <작은책> 2012년 6월호부터 10월호까지 다섯 차례 연재되었다. 이씨는 2012년 10월과 11월 ‘평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연재글 6회분과 ‘평양개구리, 똑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글 7회분을 소측에 발송 신청했다. 그러나 소측은 연재글을 검열하고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제3호)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제6호)에 해당한다며 발송을 불허하고 서신을 교도소에 영치했다. 이후 이씨가 발송 신청한 연재글 8회분부터 15회분까지는 발송이 허가되어 <작은책> 2013년 7월호까지 연재되었다.

이에 이씨는 2013년 1월 연재글 6회분에 대한 소측의 서신 검열, 발송 불허 및 교정시설 영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같은 해 10월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집필문이 이씨가 약 20년 전 인도에서 북경을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하였을 당시 느꼈던 개인적인 감상을 수필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반미주의 등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 사상을 직접·무조건적으로 찬양·고무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주교도소장이 항소했으나 지난 1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창형)는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고, 해당 사건은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11월 6일 이씨는 위 행정소송의 담당 변호사와 지인 3명에게 각 1통의 등기우편을 발송했는데, 서신담당 직원은 편지가 검열된 사실을 이씨에게 구두로 통보했다. 직원은 어떤 서신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검열되었는지 특정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소측에 서신 검열 절차 등에 관한 자료 및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신 검열 정보처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안(관련)사범 관련 수용관리 및 처우에 관한 비공개 정보”라는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소측은 이를 기각하면서 “총 115건 서신 검열한 후 검열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신 검열 사실을 구두로 통보 받은 것은 2013년 11월 6일이 처음이라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서신 검열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우리 위원회에 서신 검열의 부당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물론 이 서신도 검열 당했다. 이씨는 자신이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서신을 개봉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열어서 볼 것이라고 담당 직원이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2013년 11월 전주교도소장에게 질의서를 보내자 소측은 답변서를 통해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교정행정 내부의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행정정보”라고 밝혔다. 또한 “진정인은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범으로서 수용관리 및 교화에 있어 일반수용자보다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자”라며 11월 6일자 발신등기서신 중 2통을 검열했다고 밝혔다.

구 행형법은 원칙적으로 서신 검열을 허용했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규정했으나 2007년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제43조 제4항)고 규정하여 무검열 원칙을 선언했다. 다만, 그 예외로 개별 서신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수용자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 이후 해당 수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관련 법령을 모두 살펴봐도 ‘서신검열 대상자’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14년 2월 소측은 이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현재 서신검열과 관련하여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달 이씨는 담당 직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2014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 지침이 바뀌어서 종전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하지 않고 있고 개별 서신 하나하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신 검열 담당자가 검열을 하고 그 사실을 구두로 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담당 직원이 “개인 앞으로 보내는 서신은 검열하지 않지만 사회단체나 기관에 보내는 것은 검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처럼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에 대한 서신 검열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초까지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교인권위 등

인권사회단체에 보낸 편지, 월간 <작은책> 등 언론사에 보낸 편지까지 최소 30통의 서신을 검열했다고 담당 직원이 구두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서신 검열의 목적이 형집행법이 정한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씨가 알몸검신 등을 외부에 알린 이후 △행정소송 △외부 기고 △추가적인 문제제기 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씨는 구두 통보를 받을 때마다 등기우편 영수증에 표시를 하여 이번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씨에 대한 서신 검열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양심수를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안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편지에 형집행법의 서신 검열 요건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형집행법의 서신 무검열 원칙을 포기하고 무제한적인 검열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정치적 의견…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형집행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소측은 이씨에 대한 서신 검열을 유지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씨는 서신업무 담당자가 바뀐 후인 2013년 11월 6일 처음으로 서신 검열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한다. 소측이 그때까지 서신 검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형집행법 제66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이후 소측은 계속 구두로만 통보했으며 이씨의 문서 통보 요구에도 담당자는 교정본부 지침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서신 검열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서신이 어떤 근거로 검열되었는지 등 그 내역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문서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아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하여 구두 통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용자에게 서신 발송에 대한 ‘위축효과’를 주어 수용자가 서신 작성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서신 검열 통지는 대상자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씨가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문서 통지를 요청했음에도 소측은 올해 들어서도 구두 통지만 하여 서신 검열에 관해 법적으로 다툰 이씨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씨가 보낸 서신뿐만 아니라 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우려도 있다. 이씨에 따르면, 받는 서신도 모두 봉투가 개봉된 상태로 전달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소송의 담당 변호사인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오가는 서신도 검열되고 있다. 송변호사는 2014년 2월 이씨와 접견을 하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 이후 송변호사는 전주교도소장에게 서신을 보내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소송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이병진 씨와 서신을 주고받을 예정”이라며 “본 발신인과 이병진 씨 사이에 향후 주고받는 서신은 수용자인 이병진 씨의 재판청구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소송 진행을 위하여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향후 발신인과 이병진 씨 사이에 오가는 어떠한 서신에 대하여도 서신을 개봉하여 서신검열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측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 소측은 “재판청구권이나 소송 진행을 방해 한다거나 관련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지만, 이씨와 담당 변호사가 논의하는 소송 전략을 소송 상대방인 전주교도소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수용 기간 내내 소측이 자신의 모든 서신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도 소측의 전적인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씨의 생각이다. 이씨에 대한 서신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와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 추진 모임’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와 전주교도소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에 대한 서신 검열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의

이 사건은 교정시설의 무분별한 서신 검열 실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피해를 배상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안사범 서신검열 관련 규정의 위헌성도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될 전망이다.

04. 공익소송 일지

- 2008. 12. 15.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규」 제정, 내규에 따라 공익소송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경용, 위원 변연식/설현천/정재돈/주영달, 담당 활동가 조백기
- 2009. 3. 12. 공익소송소위원회 회의
- 2009. 5. 21. 공익소송소위원회 회의
- 2009. 5. 25. 故유현석 변호사님 5주기 추모미사 및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출범식
- 2009. 6. 22. 「공익소송소위원회 및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2010. 4. 14. 공익소송소위원회 2010년 1차 회의
담당 활동가를 강성준으로 변경
- 2010. 7. 19. 공익소송소위원회 2010년 2차 회의
- 2011. 3. 18. 공익소송소위원회 2011년 1차 회의
- 2011. 4. 11. 공익소송소위원회 2011년 2차 회의
- 2011. 5. 23. 공익소송소위원회 2011년 3차 회의
- 2011. 9. 29. 공익소송소위원회 2011년 4차 회의
- 2011. 12. 8. 공익소송소위원회 2011년 5차 회의
- 2012. 1. 12. 공익소송소위원회 2012년 1차 회의
- 2012. 2. 8. 정기총회에서 기존 소위원회 체계를 팀제로 개편하기로 함
공익소송소위원회를 공익소송팀으로 변경함
- 2012. 8. 16. 공익소송팀 2012년 1차 회의
팀장 주영달, 팀원 김현성/서선영/이덕우/이영우, 담당 활동가 강성준

- 2012. 10. 15. 공익소송팀 2012년 2차 회의
- 2013. 1. 17. 공익소송팀 2013년 1차 회의
- 2013. 4. 4. 공익소송팀 2013년 2차 회의
- 2013. 5. 16. 공익소송팀 2013년 3차 회의
- 2013. 6. 5. 공익소송팀 2013년 4차 회의
- 2013. 9. 10. 공익소송팀 2013년 5차 회의
- 2013. 10. 25. 공익소송팀 2013년 6차 회의
- 2014. 1. 27. 공익소송팀 2014년 1차 회의
- 2014. 3. 19. 공익소송팀 2014년 2차 회의
- 2014. 4. 11. 공익소송팀 2014년 3차 회의
- 2014. 5. 26.故유현석 변호사님 10주기 추모미사 및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보고회

05.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애



1927년



9월 19일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 58번지에서 부친 유주성과 모친 한정순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본명은 병수(炳秀)이고 현석(鉉錫)은 자(字)인데 어린 시절부터 자로 통하셨다. 모친은 1903년 10월 4일(음 8월 14일), 부친은 1904년 12월 27일(음 11월 21일)에 태어나셨고, 1920년 4월 2일에 혼인하셨다. 혼인 후 7년 남짓이나 아이가 없다가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그 후 부모님은 아들 둘과 딸 둘을 더 얻으셔서 모두 3남2녀를 두셨다.

1930-31년경(4-5세)

일찌감치 한글을 깨치셨다. 장기 출장이 잦으셨던 부친이 글을 읽지 못했던 모친과 서신 왕래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1934년 (8세)

4월 2일 오가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셨다.

1936년 (10세)

2월 1일 경성재동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셨다. 글씨를 잘 쓰고 똑똑한 아이였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마지메'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요즘의 우리말로 하면 '범생' 정도의 일본어이다.

1940년 (14세)

3월 26일 재동공립심상소학교를 졸업하시고, 4월 1일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하셨다.

1945년 (19세)

경기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경성대학예과 문과을류(법학)에 입학하셨다. 여름방학에 고향에 가 있던 중 해방을 맞았다. 가을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니 이미 학교사회는 좌우익으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물가가 치솟아 다시 고향으로 가 계시다가 12월 10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재판소 서기로 임명되셨다.

1946년 (20세)

3월 31일 경성대학예과를 중퇴하셨다.

1950년 (24세)

6월 25일 일요일 정상순과 선을 보셨다. 그날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12월 초에 서산성당으로 유봉운 신부님을 찾아가 세례를 청하셨고, 12월 13일 사도 요한이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1951년 (25세)

11월 4일 정상순과 예산성당에서 혼배하셨다.



1952년 (26세)

6월 3일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셨다. 10월 23일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셨다.



1953년 (27세)

군법무관으로 입대하여 1956년 소령으로 제대할 때까지 6사단과 육군 본부에 근무하셨다.

1954년 (28세)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이돈명을 만나 평생의 지기가 되었다.

1956년 (30세)

9월 28일 대전 대흥동성당 사목회장으로 취임해 서울로 전근하신 1959년까지 일하셨다.

1957년 (31세)

2월 16일 셋째 아들 이규를 얻으셨다. 아직 세째가 태중에 있을 때 이번에도 아들이면 사제가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셋째 아들은 실제로 작은 형제회 신부가 되었다. 임지를 따라 대전의 대흥동과 은행동, 서울의 청파동과 효창동, 다시 대전의 선화동으로 셋집을 전전하시다가 선화동에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하신 것이 이때쯤이다.


1959년 (33세)

1월 10일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셨다.

1960년 (34세)

1월 1일 녹조소성훈장을 받으셨다. (4838호)

1962년 (36세)	6월 1일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다.
1963년 (37세)	1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12월 17일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다. (33305호)
1965년 (39세)	3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1966년 (40세)	3월 28일 판사직을 그만두고 4월 7일 김제형, 이돈명, 이동신과 함께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여셨다. 제일합동은 공동수임, 공동수행, 공동수입, 공동지출,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로펌이다.
1974년 (48세)	혜화동본당의 사목회장을 맡아 1982년까지 일하셨다. 사목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전임회장으로 계속 성당 일을 도우셨다. 8월 19-22일 꾸르실로 교육을 받으셨다. (서울 21차) 이때쯤부터 매일 새벽미사에 참례하시기 시작해서 평생을 거의 거르는 일이 없으셨다.
1976년 (50세)	명동구국선언사건의 변호를 맡으셨다. 4월 19일 부인 정상순이 은혼을 반 년 앞두고 선종하셨다.
1981년 (55세)	5월 15일 한국천주교 교포사목후원회 감사에 선임되셨다.
1982년 (56세)	2월 15일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회장에 취임하셨다. 9월 25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이사에 선임되셨다.
1983년 (57세)	4월 16일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장에 선출되셨고, 1985년 5월 연임되셨다. 5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로패를 받으셨다.
1984년 (58세)	4월 12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민사소송법 특별분야)에 위촉되셨다.
1985년 (59세)	1월 28일 셋째 아들 이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성대서약을 했다.
1986년 (60세)	2월 21일 셋째 아들 이규가 사제서품을 받고 2월 23일 혜화동성당에서 첫 미사를 드렸다. 12월 11일 인권기념일 대한변호사협회 표창패를 받으셨다.

1987년 (61세)	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인권)이사에 취임하셨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변론을 맡으셨다.
1988년 (62세)	10월 14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이 창립되면서 상임대표에 취임하셨다.
1989년 (63세)	3월 1일 재단법인 평화방송 이사에 선임되셨다.
1991년 (65세)	2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 운영위원에 선임되셨다. 강경대 사망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셨다.
1992년 (66세)	1월 26일 배드민턴 동호회인 연우클럽 회장을 12년 동안 맡으신 공로로 공로패를 받으셨다. 2월 20일 한국법학원 남북관계법률연구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셨다. 2월 23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창립되고 고문으로 위촉되셨다. 5월 10일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에 선임되셨다. 6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 운영위원장에 취임하셨다.
1993년 (67세)	5월 1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셨다. (498호)
	
1996년 (70세)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로상을 받으셨다.
1997년 (71세)	6월 18일 1993년부터 97년까지 자문위원장을 맡으신 공로로 한겨레신문 감사패를 받으셨다. 8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에 취임하셨다.
1998년 (72세)	5월 15일 창간10주년을 맞은 한겨레신문의 감사패를 받으셨다.
1999년 (73세)	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에 취임하셨다. 10월 4일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고문으로 위촉되셨다.

2000년 (74세) 1월 한국법학원 이사에 선임되었다.
 3월 1일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한몸운동 이사에 선임되었다.
 8월 21일 제1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다.
 9월 4일 대한변협 의약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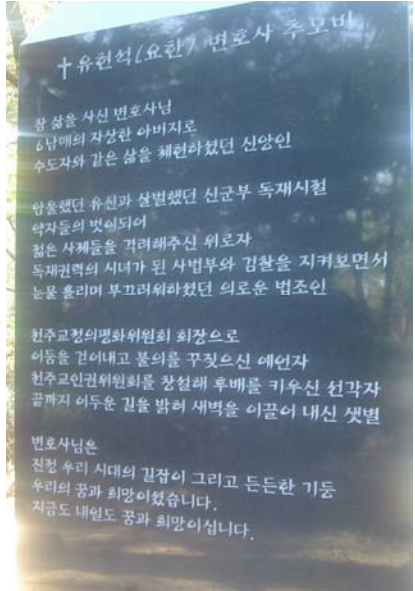
2001년 (75세) 8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감사에 선임되었다.

2002년 (76세) 3월 21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에 취임하셨다.



2003년 (77세) 1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을 받으셨다.
 8월 25일 법률문화상을 받으셨다.

2004년 (78세) 3월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의 대통령 대리인을 담당하셨다.
 5월 25일 심근경색으로 선종하셨다.
 슬하에 5남1녀와 10명의 손주를 두셨다.



유헌석 공익소송기금 보고서 (2009~2014)

발행일 2014년 5월 26일
발행인 김형태
발행처 천주교인권위원회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명동 2가 1-19)
T. 02-777-0641 F. 02-775-6267
chrc@chol.com www.cathrights.or.kr

후 원 국민은행 004-01-0724-877 (천주교인권위원회)
농 협 301-0076-9349-51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은행 454-035589-13-101 (천주교인권위원회)
우 체 국 010017-02-544517 (천주교인권위원회)
지로번호 7618893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 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